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4가단10106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피 고 1. 유한회사 B
2. C

변 론 종 결 2024. 5. 28.

판 결 선 고 2024. 6. 11.

주 문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554,187원 및 그중 8,901,170원에 대하여 2024.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피고 D에 대하여는 소취하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방해미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피고 유한회사 B E 와 피고 C 에 대하여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위 유한회사 B 와 C 은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자'이며, 피고 D 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위 C 의 상속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약의의 '수익자'입니다.

2. 이 사건의 발생 경위

가. 양수금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소의 유한회사 F 는 G (변경전 상호 : H) 주식회사로부터 취득원가 금 38,085,550원의 수입자동차 를 리스기간 44개월, 매월 리스료 856,969원(자동차세 포함), 연체이자율 연 25%로 하여 리스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유한회사 B 는 2012. 6. 4. F 가 G 에 대하여 부담하는 리스계약에 기한 리스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였고, 피고 C 은 위 B 가 G 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리스계약서 참조).

그런데 위 B 와 C 은 위 리스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위 G 은 2016. 7. 20. 원고에게 C 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1, 2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따라서 위 양수금 채권과 관련하여 B 와 C 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7,554,187원 및 그 중 금 8,901,170원에 대하여 2024.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3호증 채권계산서 참조).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위 C 의 아버지는 소위 I 이었는데, 위 I 은 2021. 3. 5. 사망하였고, 위 C 은 위 I 의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상속할 수 있었음에도(위 I 의 상속인들 및 C 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가족관계 등에 대한 사실조회촉탁 신청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고에게 자신의 지분을 모두 넘겨버려, 2021. 9. 28. 피고 D 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갑 제4호증의 1, 2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무조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위 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위 부동산 중 채무자인 위 C의 상속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위 C의 재산인데, 위 C은 분할협의를 통해 위 지분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여 그 무자리의 상태를 더 심화시켰는바, 위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은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바(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 D는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무

11 (1) 따라서 피고 C 및 피고 D 사이의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마땅합니다.

원고는 전술하였던 증거신청을 통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반환되어야 하는 C의 상속지분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향후 청구취지를 변경토록 하셨습니다.

(2)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인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 D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위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목록

1. 전라북도 완주군 대 522㎡

2. 전라북도 완주군

[도로명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적벽동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95.2㎡ 값.

변경된 청구원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피고 유한회사 B E 와 피고 C 에 대하여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위 유한회사 B 와 C 은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자'입니다.

2. 이 사건의 발생 경위

가. 양수금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소의 유한회사 F 는 2012. 5. 31.경 G 변경전 상호 : H 주식회사로부터 G 소유의 취득원가 금 38,085,550원의 수입자동차 를 리스기간 44개월, 연체이자율 연 25%로 하여 리스하는 내용의 자동차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습니다.

피고 유한회사 B 는 2012. 6. 12. 위 F 가 G 에 대하여 부담하는 리스계약에 기한 리스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였고, 피고 C 은 위 B 가 G 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이상은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각 자동차리스승계신청서¹⁾, 자동차리스승계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참조).

1) 갑 제8호증의 1은 기 제출된 갑 제1호증과 동일한 서류입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리스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위 G은 2016. 7. 20.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갑 제2호 증의 1, 2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따라서 위 양수금 채권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7,554,187원 및 그 중 금 8,901,170원에 대하여 2024. 1. 3.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율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3호증 채권계산서 참조).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